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5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수익 발생 시설물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수익금의 처리 및 정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26조제3항)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안 제31조제2항)

다. 위탁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계속 위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 위탁계약 해지 가능

라.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처리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1)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용도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제한

2) 위탁관계 단절 시 발생하는 잔여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처리

마. 위탁시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 의무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 수탁자는 3개월마다 수익금 지출사항 상세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4.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서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정산, 지도감독 및 계약해지 등 근거를 구축하고

○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과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귀속 방법을 신설하고 위탁시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명시한 것임.

○ 현재 우리구 전통시장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주차장이 유일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는「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에 따라 시행 중으로

○ 조례개정안 내용이 운영지침, 협약 등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붙임 2 **서울시 자치구 전통시장 지원 조례 현황**

(2022. 11. 현재 기준)

연번	자치구명	조례 제정	시설물 관련 조항 여부			
			시설물 위탁	위탁취소 근거	수익금 사용 용도 제한	수익금 정산 의무
1	종로구	O	O	X	X	X
2	중구	O	O	X	X	X
3	용산구	O	O	X	X	X
4	성동구	O	O	X	X	X
5	광진구	O	O	O	O	O
6	동대문구	O	O	X	X	X
7	중랑구	O	O	X	X	X
8	성북구	O	O	X	X	X
9	강북구	O	O	X	X	X
10	도봉구	O	O	X	X	X
11	노원구	O	O	X	X	X
12	은평구	O	O	X	X	X
13	서대문구	O	O	X	X	X
14	마포구	O	O	O	O	X
15	양천구	O	O	X	X	X
16	강서구	O	O	X	X	X
17	구로구	O	O	X	X	X
18	금천구	O	O	X	X	X
19	영등포구	O	O	X	X	X
20	동작구	O	O	X	X	X
21	관악구	O	O	O	O	X
22	서초구	O	O	X	X	X
23	강남구	X	-	-	-	-
24	송파구	O	O	X	X	X
25	강동구	O	O	X	X	X

□ 개정안 관련 타 자치구(관악, 마포, 광진) 전통시장 지원 조례 조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제3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제38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의2(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3(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조례 반영한 전국 지자체 (28개)

- (서울)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 (인천) 미추홀구, 서구 / 세종시 / (경기)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 (강원) 동해시, 원주시 / (충북) 음성군, 제천시, 천안시 / (충남) 부여군, 아산시, 태안군 /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 (전남) 무안군, 순천시 / (경남) 진주시, 함양군